

제 64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4월 10일 하오 2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4월 10일 하오 4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1명

결석의원 김경인, 박두순, 이정권, 천철수, 김일섭 의원

6. 출석공무원

교육감 신현중 및 학무과장 유창덕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 1)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 개정의 건
- 3)재산 매각처분의 건 (중앙 서부교장관사)
- 4)재산취득의 건 (중앙 서부교장관사 및 교육감 관사)
- 5)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추가 경정의 건
- 6)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
- 7)목포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토의사항

◇신 현 중 교육감

- 자(自) 1항에 대한 제안 이유설명

◇김 삼 성 의장

- 신 교육감의 제안 설명에 의하면 오는 4월 12일까지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니 제 의원께서는 부대 안건 1항부터 6항까지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요망합니다.

◇강 영 락 의원

- 신 교육감의 설명은 마치 5년 전 미국대통령 (트)씨와 (아)씨간의 관계와 비교할 만큼 흡사한 감을 준다. 전차 회의에서 비트하였던 특부관계를 또다시 조상에 놓고 논의 할 적에 앞날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실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며 현금이 시민 담세력과 꺾박한 준공기에 대처하여 상임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검토케한 후 본회의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중앙 국민학교의 중축 공사비의 이월이유를 묻는다.

◇신 교육감

- 당해공사의 지지부진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진퇴여부와 의결일자 등은 별도 결정하기로 하고 본 건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송할 것을 동의하다. (자(自) 1항, 자(自) 6항)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재석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강 영 락 의원

- 차기 회의 일자리는 의장과 상임위원장간 상의 후 결정 짓도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재석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무과장 장 건 식

- 제안이유 설명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사전 서면 결의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신현중 교육감은 임기만료 수일을 앞두고 현재 신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출석하여 열성적으로 제안 설명한데 대하여는 감탄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시 교육감은 아직까지 보직발령이 없는 것 같으니 당 시의 회의 결의로써 중앙 혹은 도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재석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의원

- 수입대매к 도정 관계에 대하여는 암암리에 의회와 행정부간 적극 노력하여 온바 있으나 수 일전 광주 모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을 보면 전차 회의의 결의내용을 불법결의인 것처럼 게재되어 당 시의회 위신을 추락시켰음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정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시내 각 신문사를 순방토록하여 오해 없도록 중용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강 영 락 의원

- 김 의원의 동의내용에는 동감하는 바이나 그 당시 비공개회의를 하였었고 현금일단락된 문제를 각 언론기관에 납득시키자는 것은 이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신중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회의를 가린다면 자율적으로 처결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는 일부터 열까지 수시 비공개 회의로써 진행하여온 것이다. 그런데 광주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당 시의회가 불법결의를 하여 국가정책을 역행한 것처럼 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도당국 과도 사전약속도 되어있고 차후 입항되는 외선이 있도록 까지 묵인하는 것이 현명한 술책이며 이제 이 문제를 번복한다면 오히려 불리를 초래하는 것이니 시기를 기대하도록 하자.

◇김 성 균 의원

- 재목 언론기관에서는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었으며 이에 대한 협조가 다 대하였다. 아마 이 보도는 도의원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진다.

◇김 상 대 의원

- 동의 철회하다.

◇정 응 표 의원

- 시내 국민학교 취학식이 시내 일제히 거행되었다. 아무리 좋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할지라도 일선 학교측의 운영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며 시내 적령아동 4,224명에 취학아동이 겨우 3,040명에 불과하며 서부학교의 실례를 보더라도 학구 변경의 이유도 있겠지만 적령아동 600여명에 300여명밖에 취학이 안되었다.

- 그 원인은 결식 아동의 속출과 서부교는 꺼리는 북교교를 동경하는 데 있다고 보아지며 이로 인하여 서부교는 폐교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 그리하오니 본 의회의 결의로써 미취학 아동 진상조사 위원단을 구성하되 그 인원의 지정은 제 의원의 합의하에 조직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사정이 있었다.

◇김 창 희 의원

- 조사위원으로는 정 의원을 포함한 문교사회 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참가.

- 동의집 수락

정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창 희 의원

- 정응표 의원의 동의로 신 교육감의 보직발령 촉진 건의와 아울러 감사장을 증정하고 기념품 증정을 동의하다. 범위는 의장의게 일임.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성 균 의원

- 현금 맥령기를 앞두고 시내에 기아자가 속출하는 현상으로 양동 30반 거주 박기범이라는 사람은 수 일전 아사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 당 의회의 결의로 조사위원단을 구성 그 진상을 조사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강 영 락 의원

-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집행부의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과거의 구호실적 등을 청취하기로 하자.

◇김 남 진 의원

- 김성균 의원의 발언에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하나 이 사실을 집행부 측에 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사회주무 김 인 암

- 현금 각 동의 실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도 로부터 구호양곡 17석이 배당되었기로 이것을 즉시 각 동에 배당할 것인지 구호위원회와 절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 상 대 의원

- 이 문제를 의회 측에서 착수하기 전에 집행부 측에서 각 동을 통하여 엄중 조사 한 후 정확한 수자를 파악토록 한 이후, 의회 측에서 착수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김 창 희 의원

- 우선 긴급한 문제는 도에 절충하여 구호양곡을 증배 받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본다.

◇의장 김 삼 성

- 김성균 의원의 동의를 수정하여 도 당국에 교섭위원을 파견키로 하는 한편, 내 12일까지 집행부 측에서 그 실정을 정확히 조사 완료한 후 13일에 교섭위원을 상도시키도록 할 것을 중용.

- 김성균 의원 수락

상도 교섭위원으로는 명남철, 김상대 의원을 지명.

-산회 선언하다.

(하오 4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4월 11일

시의원 조 양 순

시의원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